

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1. 6. 15 규칙 제130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허가 기준) 시장은 「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.

1.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·마을버스 운송사업자
2. 안양시에 기·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·마을버스 운송사업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

제3조(사용허가 절차)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,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 납부절차)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,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,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앞면

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				
신청인	업체명		전화번호	
	대표자		인가대수	
	주사무소			
사용목적				
주차대수				
차 고 지 사용면적				
사용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			
부대시설사용(해당란에 사용면적(m ²)표시)				
사무실	세차장	CNG충전소	주유소	기 타()
<p>「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안 양 시 장</p>				

허 가 조 건

- 제1조(사용목적) 사용목적은 안양시 000 000 시내·마을버스공영차고지로 사용한다.
- 제2조(사용허가기간) 사용허가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로 한다.
- 제3조(사용료) 사용료는 「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제4조(사용료의 납부)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.
- 제6조(손해보험증서의 제출)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안양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(금 원)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(사용허가 재산의 보존)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)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용인의 행위제한)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.
 - 1.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
 - 2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
 - 3.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
- 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1. 공용, 공공용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때
 - 2.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
 - 3.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
 - 4. 그 밖에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제11조(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)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.
- 제12조(사용허가의 취소요청)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용재산의 반환)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14조(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) 사용인은 전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)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)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.
- 제17조(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)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납 부 서
(은행보관용)

제 호	년도	회계
관		
항		
목		
업 체 명		
대 표 자		
납부금액		
납부기한		
납부장소		
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		

영 수 필 통 지 서
(시 보관용)

제 호	년도	회계
관		
항		
목		
업 체 명		
대 표 자		
납부금액		
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		

영 수 증
(납부자 보관용)

제 호	년도	회계
관		
항		
목		
업 체 명		
대 표 자		
납부금액		
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		

